

11. '94 個別地價 再調査請求現況

資料提供：建設部

- 지난 3.31고시(기준일 94. 1. 1)한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대상토지인 2,532만 필지에 대해
 -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와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6.30일자로 결정·공고한 개별 지가에 대하여
- 7.1부터 8.29까지 60일간 전국 시·군·구별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조사 청구를 접수한 결과
 - '94년도 개별지가 조사대상 (2,532만 필지)의 0.18%인 총 45,08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상향요구는 34.4%인 15,511건이고 하향요구는 65.6%인 29,569건으로 집계되었음
- 이와같이 재조사청구된 지가에 대해서는 8.30부터 9.28까지 30일동안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
- '94년도 재조사청구 건수(45,080건)를 '93년도 건수(219,844건)와 비교할 경우 2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가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년간에 걸친 지가업무경험으로 지가 체계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시·군·구별로 자문평가사를 두어 공무원이 지가산정시 자문토록하여 적정지가가 유지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개별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 조사항목과 토지가격비준표의 보완·발전으로 지가산정의 객관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여 지가산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됨.

'94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현황

('94. 7. 1~8. 29)

(단위 : 필지)

시·도	재 조 사 청 구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총 계	45,080	15,511	29,569
서울	3,729	1,220	2,509
부산	1,348	283	1,065
대구	1,763	686	1,077
인천	953	166	787
광주	1,374	574	800
대전	1,021	140	881
경기	10,741	2,970	7,771
강원	2,086	394	1,692
충북	2,671	1,270	1,401
충남	4,277	2,178	2,099
전북	437	139	298
전남	689	217	472
경북	4,712	1,275	3,437
경남	8,741	3,926	4,815
제주	538	73	465

'93 개별지가 재조사청구

시·도	재 조 사 청 구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총 계	219,844	16,894	202,950
서울	16,759	1,182	15,577
부산	8,108	507	7,601
대구	9,015	2,100	6,915
인천	11,019	625	10,394
광주	5,908	257	5,651
대전	6,663	187	6,476
경기	42,681	2,953	39,728
강원	12,191	716	11,475
충북	9,842	226	9,616
충남	20,592	496	20,096
전북	7,348	513	6,835
전남	10,520	820	9,700
경북	29,151	5,279	23,872
경남	28,578	881	27,697
제주	1,469	152	1,317